소각로 내부 고형물 제거 및 내화물 보수 과업내용서



기계그룹/플랜트사업소

1. 일반사양

1.1 적용범위

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공항시설관리(주)(이하 "발주자"라 칭하고 용역업체를 "계약상대자"라 칭한다)에서 소각로 고형물 제거작업 및 내화물 보수작업 단가용역에 적용한다.

1.2 목적

유동상식 소각로 및 반건식반응탑 내부 벽면 및 출구덕트에 부착된 고형물 제거와 소각로 내화물 상태를 점검하여 배기가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·관리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전조건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

1.3 위치

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 북로 1050번길 78-19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 내

1.4 용역기간 및 용역횟수

- 1.4.1. 총계약기간 : 2024.1.1. ~ 2024.12.31.
- 1.4.2. 용역횟수 : 용역기간 내 12회
 - ※ 용역횟수는 자원회수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용역횟수 미달 시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1.4.3. 용역일시 : 발주처 요청 시(일정 협의 가능)

1.5 입찰 개요

- 1.5.1. 입찰참가 자격
 -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
 -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및 주된 사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자
 - 「건설안전기본법」 제9조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[주력분야:난방공사(3종)] 을 등록한 자
 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따른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

1.6 용역방법 및 절차

- 1.6.1. 발주자는 예정된 용역일정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일정 편의를 위하여 작업 10일 전까지 용역일정을 통보한다.
- 1.6.2. 설비의 장애 및 일정의 변경으로 예상치 못한 용역 일정에 대하여는 3일 전까지 용역일정을 통보한다.
- 1.6.3. 발주자의 일정통보 시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태를 파악하고 노내의 온도가 작업 적정 온도 이하로 하락 시 (50℃ 이하)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용역을 수행하다.
- 1.6.4. 작업 범위는 소각로 및 반건식반응탑 내부 고형물 제거작업과 작업완료 후소각로 내화물의 상태를 점검하여 내화물 균열 및 부분 소량 탈락 부분의 내화물을 보수하는 것 까지로 한다.
- 1.6.5. 작업공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.

1.7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

- 1.7.1.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정에서 발생 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재산, 인명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1.7.2.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.
- 1.7.3. 계약상대자가 용역 중 민·형사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1.8 용역지연에 따른 계약의 해지

- 1.8.1. 발주자의 긴급상항 발생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연간단가 용역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1.8.2.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의 규격 및 제안 등을 완벽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,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9 사전조사 및 주지의무

1.9.1.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입찰 및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

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.

- 1.9.2.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과업내용서의 해석상의 문제 발생 시에는 발주자의 유권 해석에 따르며 계약 및 과업내용 불이행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금액의 지급을 유보 할수있다.
- 1.9.3. 본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 상의 누락, 오류, 추가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변경요구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력하여이행하되 용역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발주자의 요구를 우선 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1.10 환경관리

- 1.10.1. 계약상대자는 용역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1.10.2. 계약상대자는 용역현장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.

1.11 과업수행 보고

1.11.1.

구 분	보고시기 및 내용		
착수보고	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제출		
	※ 관련법에 근거한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자격을 취득한 자를포함한 참여인력 현황 및 보안각서 등		
결과보고	차수별 계약 종료기한 내 준공계 제출		
	※ 준공일 이전에 제출하며, 준공검사원 및 준공내역서 등 포함		

- 1.11.2. 계약상대자는 고형물 제거작업 후 내화물 상태 점검 시 손상부분 및 보수 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수 계획서를 제출한다.
 - ※ 착수 및 준공 관련서식은 인천공항시설관리(주) 홈페이지 (www.airportfc.co.kr) > 고객지원 > 입찰정보 > 공지 "인천공항시설관리(주) 과업수행관련 제출서류"에 게시

1.12 대가의 지급

- 1.12.1. 계약상대자는 대금 정산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청한 용역 건별 실적에 따라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용역 대금을 청구하고 "발주자"는 건별 용역결과 확인 후 절차에 따라 계약업체 계좌에 입금한다.
 - 제출서류 : 대금 지급 청구서(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), 용역수행 결과보고서(사진대지 포함)

1.13 기타

- 1.13.1. 발주자 제공자료는 본 용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- 1.13.2. 본 용역은 발주자의 과업내용서에 준하여 계약상대자가 용역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하에 용역을 진행하며 또한 본 과업내용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에 의해 변경 시행될 수 있다.
- 1.13.3. 계약상대자의 용역지시 불이행 시 발주자는 설비의 보호를 위하여 타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

2. 특별사양

2.1 적용범위

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공항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고형물 제거 및 내화물 보수작업 연간 단가용역에 적용하며 인천공항 자원회수시설이 용역업체인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.

본 과업내용서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작업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
2.2 목적

유동상식 소각로의 특성상 가동 중 발생하는 연소실 출구덕트 및 벽면에 부착된 고형물을 제거하고 내화물의 상태를 점검, 보수하여 배기가스의 흐름을 원활하 게 유지관리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전조건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.

2.3 공급범위

연번	항목	발주자	계약상 대자	비고
1	전력(조명/에어햄머 220V)	0	0	발주자는 전원만 제공
2	압축공기	0		
3	작업장비, 자재, 인력,강관비계		0	
4	작업장비 상,하역		0	
5	설비 개구부의 Open, Close		0	
6	작업 안전 장구류		0	
7	작업폐기물(탈진 고형물)	0	0	계약상대자가 톤백에 담아 지 정장소로 이송
8	주위 정리정돈 및 점검		0	

2.3.1. 발주자 공급범위

- ① 작업에 필요한 전기(220V, 380V) 용수 등 제공
- ② 작업에 따른 관련 시설 기술자료 제공
- ③ 작업에 필요한 자재 보관장소 제공
- ④ 발생폐기물(고형물, 비산재 등) 포장용 마대는 계약상대자가 준비

2.3.2. 계약상대자 공급범위

- ① 발주자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의 작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, 자재, 인력, 기술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.
- ② 본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 중 고형물 및 비산재는 계약상대자 가 준비한 톤백에 담아 발주자가 지정한 사업소 내 장소까지 운반한다.
- ③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, 하역, 보관, 도난 방지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.

2.4 법규, 규칙 및 표준

2.4.1. 법규 및 지침

-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- ②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동시행령, 동시행규칙
- ③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지침
- ④ 환경정책기본법 동시행령, 동시행규칙
- ⑤ 소방법, 동시행령, 동시행규칙
- ⑥ 폐기물관리법, 동시행령, 동시행규칙
- ⑦ 산업안전보건법, 동시행령, 동시행규칙
- ⑧ 물환경보전법, 대기환경보전법, 소음진동규제법, 동시행령, 동시행규칙
- ⑨ 전기사업법,
- 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, 령, 동 시행규격
- ① 기타 관련 법규

2.4.2. 규격 및 표준

① 한국산업규격(KS)

- ② 강구조 계산 기준 및 동 해설(대한건축학회)
- ③ 건축용역 표준시방서(대한건축학회)
- ④ 전기설비 기술 기준

2.5 자재

2.5.1. 용역용 모든 자재는 KS 및 국제규격에 맞는 자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
2.6 용역범위

2.6.1. 소각로 고형물 제거작업 및 내화물 보수

연번	설비명	작업범위	면적	작업회수	비고
1		연소실 출구측 Duct부 고형물	30 m²		
2		소각로 내부 벽면 고형물 및 비산재	176 m²		
3		소각로 하부 디프렉터 상부 형성 고형물	10 m²		
4		산기노즐 상부 유동사 및 불연물	8m²		
5	소각로 -	산기노즐 상부 용융고착물(AL) 제거	-		
6		불연물 배출구 고형물 배출(2개소)	-		
7		내화물 손상부분 점검	-		
8		점검구 패킹 점검 및 교체	-	12ই	
9		고형물 및 비산재 지정장소 이송	-	,	
10		내화물 균열부 최대폭 10mm 이상 Ceramic Fiber 채워넣기 작업	_		
11		가동 중 또는 고형물 작업 중 손상된 내화물 보수(0.02㎡ 이하)	_		
12		현장 정리정돈 및 주변청소	-		
13	반건식 반응탑	반건식반응탑 내부 벽면 고형물 및 비산재			
14		반건식반응탑 하부 호퍼 고형물 및 비산재			
15		반건식반응탑 Duct 내부 고형물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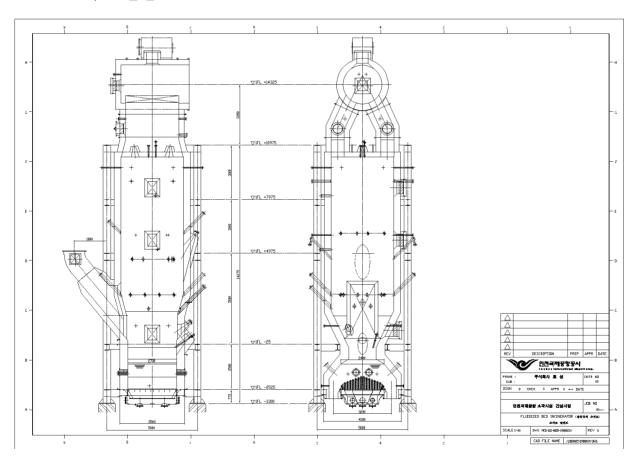
2.6.2. 강관 비계 설치용역 범위

규격	범위	소각로 내용적	비고
강관 비계	 ※ 고형물 탈진작업을 위한 소각로 내부설치 - 높이 : 산기 노즐 상부~ 연소실 출구까지 약 15m - 폭 : 가로, 세로 약 3.5m 	116m³	도면 및 개략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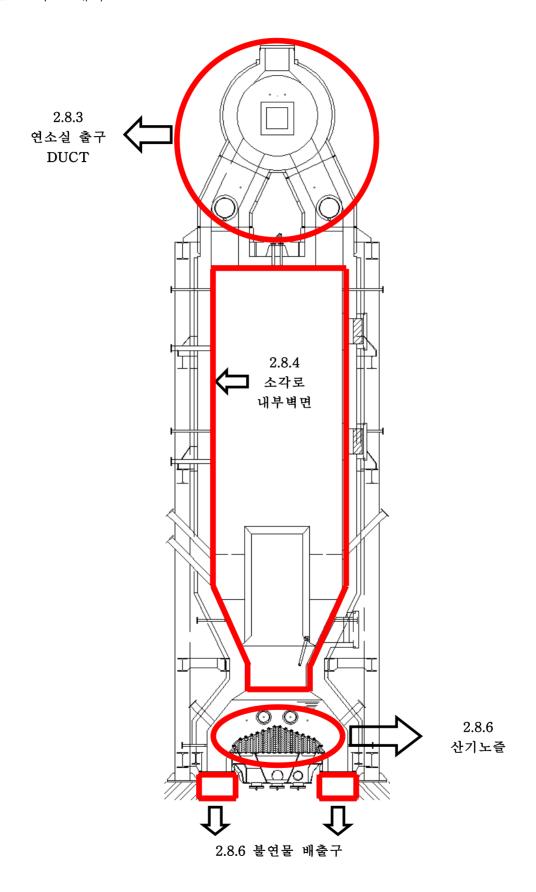
2.6.3. 소각로 고형물 제거 및 내화물 보수 연간 단가용역 물량은 운영조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물량 변동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

2.7 소각로 도면 및 개략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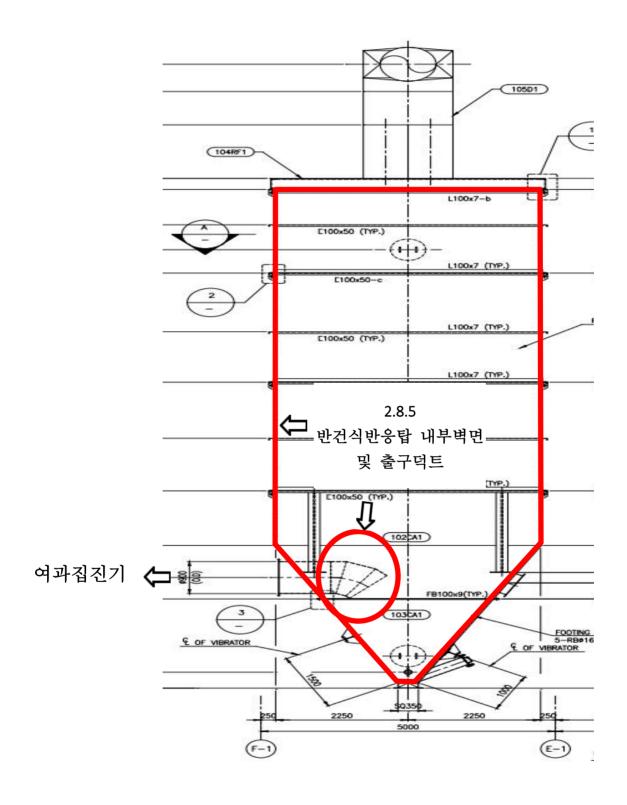
2.7.1. 소각로 단면도



2.7.2. 소각로 개략도



2.7.3. 반건식반응탑 개략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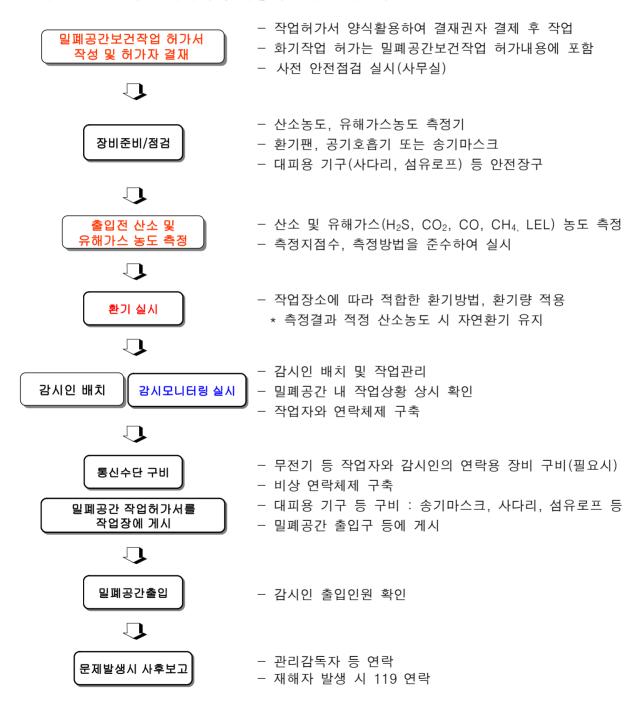


2.8 용역방법

2.8.1 소각로 내부는 밀폐공간으로서 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

◎ 밀폐공간 기본 작업절차

밀폐공간 작업시 아래의 기본 작업절차를 준수하고, 관리감독자는 작업자들이 기본 작업절차를 숙지하여 시행하도록 교육한다.



2.8.2 작업 안전을 고려한 강관 비계 설치 및 해체

- ① 성능 검정기준에 적합한 부재를 사용한다.
- ② 받침 널, 받침판 등 침하방지 및 밑둥잡이를 설치한다.
- ③ 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.5~1.8m, 장선방향 1.5m 이하로 설치한다.
- ④ 첫 번째 띠장은 지상 2m 이하로 설치한다.
- ⑤ 띠장과 장선의 간격은 1.5m 이하로 설치한다.
- ⑥ 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 초과 금지
- ⑦ 벽 이음은 수직 10m 수평 5m 이내이다
- ⑧ 작업 발판은 2개소 이상 고정하며 추락 및 낙하물 방지를 조치하여야 한다.
- ⑨ 모든 작업은 쌍줄 비계 매기를 기준으로 한다.
- ⑩ 발판 1개당 지지물은 최소 2개소 이상 장선에 지지하도록 한다.
- ①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40조 및 「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근거하여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자격 취득자 입회하에 시행한다.

2.8.3 연소실 상부 출구덕트 고형물

- ① 고온의 연소 가스가 지나가는 덕트는 쉽게 냉각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작업 시 고온에 대비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.
- ② 덕트 내부가 협소하고 좌·우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므로 안전발판을 이용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하고 작업시 필히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③ 덕트 내부에 쌓인 고형물의 구조는 HARD/MELTING 고형물로써 에어햄머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굴착 후 잘게 부순 고형물은 맨홀을 이용하여 반 출, 톤백에 담아 지정된 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.

2.8.4 소각로 내부 벽면

- ① 소각로 내부 벽면의 고형물은 내화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수공구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제거하여야 하며 작업 후에는 내화물의 손상, 균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- ② 작업과정에서 내화물 손상부위 발생 시 동재질에 의한 보수작업을 시행한다.
- ③ 소각로 내부에는 별도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작업 등을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.

- ④ 낙하되는 고형물 등에 의하여 노즐 및 노상 온도계 등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업 전 취외 또는 방지대책을 마련한다.
- ⑤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연소용 공기노즐, 침출수 분무 노즐, 등의 막힘은 없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보조버너 화염분출구 주변에 고형물 등으로 인한 보조버너 점화 시 장애 발생의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2.8.5 반건식반응탑 내부 벽면 및 출구덕트

- ① 반건식반응탑은 원통형 구조물로 내부에서 반응탑 내부 고형물 및 비산재 제거 시 붕괴 및 낙하의 위험이 있으므로 외부에 설치된 맨홀을 이용하여 1차 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1차 제거작업은 기기 내부 표면에 붙어있는 고형물 및 비산재를 알맞은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.
- ③ 2차 마무리 제거작업은 브러쉬나 기타 알맞은 도구를 이용하여 고형물 및 비산재를 완전히 제거한다.
- ③ 반건식반응탑 하부 호퍼 작업 시 상부에서 고형물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호퍼 상부에 보호 발판을 설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.
- ④ 반건식반응탑 출구덕트는 소석회 분무에 의한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덕트 내부에 고형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.
- ⑤ 반건식반응탑 출구덕트 내부 고형물 제거작업 시 기설치된 구조물(온도계 등) 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.
- ⑥ 상기 작업 완료 후 반건식반응탑에서 모인 고형물 및 비산재는 톤백에 담아 지정된 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.

2.8.6 산기 노즐 및 불연물 배출구

- ① 산기 노즐 상부에 산재된 고형물, 유동사, 불연물 등은 1층 점검구를 이용하여 외부로 반출한다.
- ② 산기 노즐 주변에 가동 중 용융되어 고착된 알루미늄 등은 수공구를 이용하여 노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 탈착한다.
- ③ 산기 노즐은 8개의 Air Hole 구조로 되어있으며 Hole의 막힘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산기 노즐 하부 불연물 배출구(2개소)의 불연물 배출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형물의 적체로 인한 장애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2.8.7. 내화물 보수작업

- ① 내화물 최대폭 10mm 이상의 균열에는 Ceramic Fiber를 채워 넣는다
- ② 가동 중 또는 고형물 탈진작업 중 발생한 내화물 소량(0.02㎡) 탈락 부분에 있어서는 동등한 재질에 의한 보수작업을 시행한다.

(90RAM PC 또는 HSC-16G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.)

2.8.8 공통사항

- ① 정비작업을 위한 모든 맨홀은 계약상대자가 개폐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,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, 현장내부와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③ 과업내용서에 따라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며,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지시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,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,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 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- ④ 작업 시에는 비산재 또는 이물질의 흩날림을 최소화하고 작업완료 후에는 당 현장에 비치되어있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주변 청결을 유지한다.

2.9 하자 및 검사

2.9.1 시험 및 검사

- ① 작업 완료 후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청소 상태가 95% 이상 처리 되어져 있어야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.
- ②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작업완료 후 각종 설비의 작동상태가 양호 하여야 하며, 작업에 의한 전기적 누전 및 단락, 설비의 이상 작동 등 소각로 가동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.
- ③ 본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, 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